

8 교육부 종합감사

경희학원 및 경희대학교 교육부 종합감사

학사 운영

- 강의계획서 미입력 (246개 강좌)
- ‘B+를’ 미준수 (3,330개 강좌)
- 성적 산출자료 미보존 (8,827개 강좌)
- 출석일수 미달자 학점 부여
- 휴강 후 보강 미실시 (85.5시간)
- 현장실습생 생애보험 등 미가입
- 경영대학원 계약학과 설치 규정 미준수

조직 인사

- 체류자격 미달자 외국인 교원 재임용
- 범죄처분 통보 교원에 대한 징계 미의결
- 교원 임용과정서 신원조사 및 성범죄 경력 미확인
- 교원 신규채용 절차 미준수
- 교원의 미허가 사외이사 겸직
- 음주운전 3회 적발 교직원 당연퇴직 미처분
- 교직원 채용 과정서 행정 착오

예산 관리

-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입시수당 지급
- 교직원 국외출장/워크숍 여비 초과 지급
- 미시공 설비에도 공사비 미감액
- 법인카드 부정 사용
- 연구비 사적 사용
- 법인 자금 부당 운용

부적절 계약

- 경영대학원 계약학과 학생모집 대행
- 글로벌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생모집 대행
- 경희의료원 의약품·한약약품 수의계약 (약 1,200억 상당)
- 일반경쟁 입찰대상 용역 수의계약 체결 (약 37억 상당)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우리학교와 경희학원, 경희의료원은 총 55개의 지적사항을 받았다.

규정 미준수 다수 대학 “적극 개선” 약속

▶1면 ‘종합감사 점검’에서 이어짐
글로벌미래교육원이 학생모집을 위탁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글로벌미래교육원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을 4개 업체에 맡기고, 15억 3,390만 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4개 업체 중 1개 업체의 대표가 현재, 모 학점은행제 총괄 주임교수라고 썼다. 교육부는 우리학교가 ‘대행 업무를 업체가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청구하는 대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썼다. 대금 중 약 3억 1천만 원은 계약학과와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개인에게 지급했다. 학점은행제 관련 규정은 학교가 학교의 이름으로 직접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점은행제인 글로벌미래교육원의 학생모집 위탁계약은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이다.

감사팀은 “규정 해석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신속히 시정 중이지만, 사업주 단체에 소규모 업체가 많아 홍보업무를 대행해줄 업체가 필요했을 뿐 이외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희의료원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1,113억 8천 원 규모의 의약품 구매 계약 4건을 경희학원의 수익 사업체가 지분 49%를 투자해 설립한 업체와 별도의 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약품 구매에 있어서도 경희의료원은 경희학원의 수익사업체와 89억 58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목적과 다른 지출 사례 규정 외 수당과 연구비 사적 사용도

예산이 정해진 목적과 다르게 지

출된 사례도 있었다. 「경희대학교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실험실습비는 실험·실습 교육에 직접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감사 대상 3년 간 1,130만 원 상당의 실험실습비는 입시 관련 행사를 비롯한 다른 용도로 지출됐다.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교직원들의 경조사비 690만 원이 복리후생비가 아닌 홍보비, 소모품비 등 다른 목적의 예산에서 집행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일부 대학원은 규정에 없는 입시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학교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시 업무를 고유 업무로 하는 부서에서의 입시 수당은 입시 관련 업무가 근무시간이 아닐 때 수행했을 때만 지급된다. 해당 대학원은 교직원 12명에게 근무시간 동안의 입시 관련 업무로 3년간 506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모 교수는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영수증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짜 회의비’를 정산했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금액

은 59만 원이다.
연세대 등 타 대학이 이미 감사 결과로 지적받은 교비 유용 사례는 우리학교에도 있었다.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교원의 연구비 사적 사용 등이다. 교육부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한 관련자 중 일부를 고발했다.

교육부는 3년간 법인카드 유용 사례 14건, 총금액 약 300만 원을 적발했다. 사용된 업장의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비정상적 시간대’에 사용된 것을 근거 삼았다. 명목은 홍보비, 업무추진비, 기타 학생 경비 등 다양하다.

2019년 1월 경희학원 직원 B씨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채권확보조치도 없이 본인 전결로 법인회계에서 300만원을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회계 처리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44일 뒤인 2월 21일 전액을 도로 법인회계에 입금했으나,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부는 위 입시 수당 부당 수령, 연구비 유용 등 위 사례들의 관련자 중 일부를 고발하고 부당하게 편취한 수익을 환수할 것을 우리학교에 요구했다.

범죄처분 교원에 징계 의결 없어 인사 행정상 실수도

교원 개인 비위가 다수 확인됐지만, 인사 관리 또한 우리학교 정관 내용과는 달랐다. 징역형을 받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없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교직원 당연퇴직 미처리 ▲교원 성범죄 이력 미확인 ▲정규직원 공개채용 부당 가점 부여 ▲전임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전임교원 채용 절차 미준수 문제 등 인사상의 규정 위반 사례도 지적됐다.

경희학원 정관은 재직 중인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음주운전 3회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은 한 직원에 대해 우리학교는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여러 사례에서 우리학교는 검찰청으로부터 교원의 범죄처분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다. 해당 교원들의 범죄명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폭행,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